의 안 번 호	제 157호
의결 연월일	2021. 10. 22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10월 14일 논 산 시 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1년 10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1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회계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대부료 등의 요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회적경제조직 및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라 창업을 위하여 사용・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요율을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함.(안 제28조제4항제7호, 제8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생략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